 <b>질병관리청</b>		<h1>보도참고자료</h1>	
배 포 일	2021. 3. 6. (총 32매)	담당부서	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
팀 장	이 선 규	전 화	043-719-9381
담당자	정 여 운		043-719-9352

##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정례브리핑)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3월 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04명, 해외유입 사례는 14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2,055명(해외유입 7,160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32,932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9,704건(확진자 75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62,636건, 신규 확진자는 총 418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353명으로 총 82,913명(90.07%)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7,510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36명, 사망자는 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632명(치명률 1.77%)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3.6일 0시 기준, '20.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404	126	12	3	19	1	0	4	1	172	7	22	7	4	3	13	5	5
누계	84,895 <sup>1)</sup>	28,011 <sup>1)</sup>	3,179	8,523	4,292	1,982	1,142	930	213	23,055	1,819	1,752	2,311	1,122	806	3,140	2,062	556

<sup>1)</sup> 검사과정 오류에 따른 정정(2.26. 0시 기준, 서울 -1)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3.6일 0시 기준, '20.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중국 외)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14	0	8	0	4	2	0	6	8	7	7
누계	7,160	40	3,190	1,238	2,324	345	23	3,002	4,158	3,864	3,296
		(0.6%)	(44.5%)	(17.3%)	(32.5%)	(4.8%)	(0.3%)	(41.9%)	(58.1%)	(54.0%)	(46.0%)

\* 아시아(중국 외) : 필리핀 1명, 아랍에미리트 3명(2명), 인도네시아 1명(1명), 파키스탄 2명(2명), 바레인 1명, 아메리카 : 미국 2명(1명), 브라질 1명, 과테말라 1명, 아프리카 : 세네갈 1명, 나이지리아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 ('20.1.3일 이후 누계)】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3.5(금) 0시 기준	82,560	7,450 <sup>1)</sup>	135	1,627
3.6(토) 0시 기준	82,913	7,510	136	1,632
변동	(+)353	(+)60	(+)1	(+)5

\* 3.5일 0시부터 3.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sup>1)</sup> 검사과정 오류에 따른 정정(2.26. 0시 기준, 서울 -1)

□ 3월 6일(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3월 6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04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371.7명), 수도권에서 317명(78.5%) 비수도권에서는 87명(21.5%)이 발생하였다.

(주간 : 2.28일~3.6일, 단위 : 명)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3.6일(0시 기준)	401	317	30	8	16	21	7	5
주간 일 평균	371.7	294.6	21.6	14.1	14.4	19.4	4.7	2.9
주간 총 확진자 수	2,602	2,062	151	99	101	136	33	20

○ 수도권

(주간 : 2.28일~3.6일, 단위 : 명)

구분	2.28.	3.1.	3.2.	3.3.	3.4.	3.5.	3.6.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수도권	268	262	241	353	312	309	317	294.6	2,062
서울	117	92	120	116	117	129	126	116.7	817
인천	13	14	10	19	18	12	19	15.0	105
경기	138	156	111	218	177	168	172	162.9	1,140

- (서울 노원구 음식점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 (구분) 종사자 2명(+2), 방문자 13명(지표포함, +5), 가족 3명(+1)

- (서울 동대문구 병원3 관련) 3월 4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 (구분) 환자 6명(지표포함), 간병인 2명(+1), 종사자 1명, 가족 4명(+2)

- (서울 은평구 사우나 관련) 접촉자 조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6명\*이다.

\* (구분) 이용자 9명(지표포함), 가족 6명, 지인 1명(+1)

- (인천 미추홀구 가족/지인모임 관련) 3월 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 (구분) 가족 7명(지표포함), 지인 3명

- (경기 동두천시 외국인집단발생 관련) 동두천시 임시선별검사를 통해 18명의 외국인이 추가 확진되어 가족, 직장, 커뮤니티 접촉자에 대해 일제검사 등 추적관리가 진행 중이다.

구분	계	2.28.	3.1.	3.2.	3.3	3.4	3.5
① 동두천시 검사건	2,742	509	154	351	560	639	529
② 외국인 확진자*	132	-	81	15	7	11	18

\* 확진일 기준 분류로 전일 검사자 다수 포함

- (경기 포천시 지인모임 관련) 3월 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 (구분) 지인 5명(지표포함), 가족 5명

- (경기 이천시 (박스)제조업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41명\*이다.

\* (구분) 종사자 26명(지표포함), 가족 8명(+1), 기타 4명, 지인 3명(+1)

- (경기 이천시 스트로폼공장 관련) 3월 4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5명\*이다.

\* (구분) 직원 12명(지표포함), 가족 1명(+1), 지인 2명(+2)

- (경기 군포시 지인모임 관련) 2월 28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 (구분) 지인 5명(지표포함), 가족 5명, 기타 1명

- (경기 수원시 태권도장/어린이집 관련) 3월 3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2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태권도장 관련	10	교사 1명(지표환자), 원생 1명, 가족 8명
② 어린이집 관련	16(+4)	원아 6명, 교사 2명, 가족 8명(+4)
③ 태권도장2 관련	6(+2)	원생 6명(+2)

### ○ 충청권

(주간 : 2.28일~3.6일, 단위 : 명)

구분	2.28.	3.1.	3.2.	3.3.	3.4	3.5.	3.6.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충청권	21	11	15	29	17	28	30	21.6	151
대전	1	-	1	2	3	-	-	1.0	7
세종	6	1	5	4	-	1	1	2.6	18
충북	10	8	5	19	12	19	22	13.6	95
충남	4	2	4	4	2	8	7	4.4	31

- (충북 음성군 유리제조업 관련) 3월 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7명\*이다.

\* (구분) 종사자 17명(지표포함)

### ○ 호남권

(주간 : 2.28일~3.6일, 단위 : 명)

구분	2.28.	3.1.	3.2.	3.3.	3.4	3.5.	3.6.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호남권	21	18	20	11	13	8	8	14.1	99
광주	14	6	4	3	6	5	1	5.6	39
전북	7	10	9	5	6	3	4	6.3	44
전남	-	2	7	3	1	-	3	2.3	16

- (전북 전주시 피트니스 관련) 3월 3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64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피트니스 관련	49(+3)	지표환자(종사자), 이용자 37명(+3), 지인 4명, 가족 4명, 기타 2명
② 주점 관련	8	이용자 6명, 지인 1명, 기타 1명
③ 지인모임 관련	7	지인 7명

○ 경북권

(주간 : 2.28일~3.6일, 단위 : 명)

구분	2.28.	3.1.	3.2.	3.3.	3.4.	3.5.	3.6.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북권	8	20	16	10	24	7	16	14.4	101
대구	5	10	12	5	19	3	3	8.1	57
경북	3	10	4	5	5	4	13	6.3	44

- (대구 동구 일가족5 관련) 3월 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7명\*이다.

\* (구분) 가족 7명(지표포함)

- (대구 북구 대학생지인모임2 관련) 접촉자 조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2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모임 1(음식점1) 관련	8	가족 6명(지표포함), 지인 2명
② 모임 2(음식점2) 관련	11	지인 5명, 기타 6명
③ 모임 3(음식점3) 관련	9(+1)	지인 3명, 가족 1명, 기타 5명(+1)
④ 모임 4(동전노래방) 관련	4	지인 2명, 기타 2명

- (경북 포항시 북구 일가족3 관련) 3월 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6명\*이다.

\* (구분) 지인 2명(지표포함), 가족 3명, 기타 1명

○ 경남권

(주간 : 2.28일~3.6일, 단위 : 명)

구분	2.28.	3.1.	3.2.	3.3.	3.4.	3.5.	3.6.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남권	11	22	20	13	26	23	21	19.4	136
부산	4	16	17	8	17	20	12	13.4	94
울산	5	2	-	1	-	-	4	1.7	12
경남	2	4	3	4	9	3	5	4.3	30

- (부산 서구 항운노조2 관련) 접촉자 조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 (구분) 종사자 8명(지표포함), 가족 2명(+1), 지인 1명(+1)

○ 제주권

(주간 : 2.28일~3.6일, 단위 : 명)

구분	2.28.	3.1.	3.2.	3.3.	3.4.	3.5.	3.6.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제주	1	-	5	4	3	2	5	2.9	20

- (제주 제주시 주점 관련) 3월 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6명\*이다.

\* (구분) 방문자 2명(지표포함), 종사자 2명, 동료 1명, 지인 1명

- (제주 제주시 불령장 관련) 2월 28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8명\*이다.

\* (구분) 지인 4명(지표포함), 가족 3명, 기타 1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경기 동두천시 임시선별검사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등이 다수 확진됨에 따라, 이에 대한 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 설명하였다.

○ 최근 사업장\* 집단감염과 관련하여 외국인 근로자 확진자가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근로특성 및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 관할 지역에서는 현재 산업단지, 지하철역 등 외국인 주요 밀집 지역에 외국인 대상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 중이다.

\* '21.1월 이후 발생 현황 : 총 14개소, 관련 확진자 523명(외국인 421명, 80.4%) (3.5일 18시 기준)

\*\* 수도권 등 4개 시도 총 22개소 운영 중(2.25일~)/누적검사 8,744명, 확진 188명(3.5일 18시 기준)

○ 이번 동두천시 외국인 근로자 대규모 집단확진 사례도 임시 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외국인 총 132명이 확진(3.6일 0시 기준)되었으며, 현재 가족 및 동일시설 생활자들에 대해 추가 검사가 진행 중이다.

- 외국인 확진자는 격리 치료하고, 직장·학교 등 소속을 확인하여 동일집단에 대해 일제검사 및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 방역당국은 지자체 및 유관부처(법무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와 △환자발생 상황 및 조치사항을 공유하고,
  - 외국인 및 노출자에 대한 신속한 검사 완료를 위해 △임시선별 검사소를 추가 운영하고 있으며,
    - \* 접근편의성과 신속한검사를 검체 채취팀이 선제검사 대상시설을 방문하여 검사
  - 경기북부 지역(연천·양주·포천 등)내 외국인 관련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선제검사 및 추적관리 계획을 마련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감염병이므로, 사회적 비난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 진단검사 회피 등 사회 전체에 더 큰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여,
  - 감염된 사실만으로 외국인 확진자와 특정지역의 일부 집단, 단체에 대한 차별과 낙인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감염 위험 대상 및 지역에 대한 선제검사 실시 현황을 설명하였다.
  - 감염취약시설의 지난 한달 간('21.2.1. ~ 2.28.) 검사 현황은,
    - 전체 대상 기관의 99.3%(63,673개소/63,215개소), 전체 대상 인원의 119.8%(1,860,453명/2,228,919명)가 검사를 받아, 전월 대비 대상 기관은 3.4%, 대상인원은 17.0% 증가하였고
    - 이번 검사를 통해, 34개소에서 총 41명\*이 양성으로 확인되었다.
    - \* 요양병원(12개소) 13명, 정신병원(2개소) 2명, 요양시설(19개소) 25명, 장애인거주시설(1개소) 1명

- 감염발생이 우려되는 특정대상 및 지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선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2월말 기준)까지\* 검사 현황을 살펴보면,
  - \* 입영장병('20.5.18~), 교정시설('21.1.1.~), 교육부 기숙사입소생('21.2.22~), 경찰청 집회동원병력('20.10.5.~지금까지 5차례 실시)
  - 입영장병 296,022명(국방부), 교정시설 종사자·입소자 131,174명(법무부) 검사를 실시하여 총 38명\*이 양성으로 확인되었고,
    - \* 입영장병 16명, 교정시설 21명(종사자 3, 입소자 19)
  - 전국모집 고등학교 기숙사 입소생 62천 여명(교육부) 및 집회동원 경찰병력 8천 여명(경찰청)에 대하여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지역의 선제검사에서는 총 6개 시·도약 58천 여명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총 108명(부산 2명, 충북 4명, 충남 30명, 경북 72명, 대구·강원 0명)의 감염자를 발견하였다.
- 방역당국은 감염위험이 증가하는 지역 및 특정대상에 대한 선제검사를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 진단검사 운영방안'을 마련(2.26일)하였고
  - 이를 통해 검사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등 감염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요 내용을 안내하였다.
  - 이번 개정으로 코로나19 방역 현장 대응에 실효성을 높이는 등 감염병 관리대책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 시급성을 고려하여 공포 후 즉시 시행되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 개정안 공포 예정일 : '21. 3. 9일(화)



<코로나 19 대응 관련 사항>

-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 예방·방역조치를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로 인해 지출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 입원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

- 또한, 특정집단(단체) 등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등의 조치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 가중처벌 적용 대상

- (역학조사 방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79조제1호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50%
- (입원·격리 조치 등 위반)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79조의3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50%

-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 운영 중단·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까지로 확대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또한, 폐쇄 명령을 하기 전 청문\*을 거치도록 절차를 명시하고, 폐쇄 명령 이후 위기경보 또는 방역지침의 변경 등으로 폐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쇄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 (청문) : 행정기관이 행정처분 등을 행하는데 의견 청취 및 사실을 조사하는 절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

<예방접종 및 백신·의약품 관련 사항>

-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감염병 대유행시, 기존의 백신이나 의약품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 등에 대하여 미리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처리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였다.

- 공포 6개월 후 시행예정인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5년마다 수립하는 감염병관리기본계획에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감염병 정보의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 또한, 감염병 위기 시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소독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염병 관리대책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주말을 맞아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 다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설 운영자가 책임 의식을 갖고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국민들께 백신접종으로 집단면역이 생기기 전까지, 안전하게 다음의 세가지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 첫째, 장소·상황을 불문하고,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한다.
    - 실외에서도 2m이상 거리유지가 안되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상황(식사·음주·흡연)은 가급적 피한다.
  - 둘째,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거리두기를 실천한다.
    - 2주간 연장된 거리두기(3월 1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방역수칙을 충실히 이행한다.
  - 셋째, 발열·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검사 받는다.
    - 의료기관은 환자가 선별진료소에서 문진 절차 없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 방문 시 검사의뢰서를 적극 발급한다.

##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 정은경)은 3월 6일 0시 기준 신규로 67,840명이 추가 접종받아 296,380\*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91,131명, 화이자 백신 5,249명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현황(3.6일 0시 기준, '21.2.26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67,840	10,670	5,674	5,119	4,082	1,975	1,244	1,646	105	15,982	1,069	1,924	2,610	1,591	1,918	4,501	7,230	500
누계	296,380	34,156	24,725	14,400	18,265	11,614	7,242	5,854	555	68,928	6,253	10,847	15,401	13,366	15,395	17,867	29,323	2,189

\* 2.26일~3.4일 접종자 2,687명이 3.5일 추가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

※ 상기 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접종기관 및 대상자별로는 요양병원은 165,743명(81%), 요양시설은 53,380명(49.2%), 1차 대응요원은 2,551명(3.3%),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69,457명(22%),
  - 코로나19 환자치료병원은 5,249명(9.3%)이 예방접종을 받았다.

【접종기관·대상자별 예방접종 현황(3.4일 0시 기준, '21.2.26일 이후 누계, 단위: 명, %)】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대상자	762,093	132,590	99,910	39,335	42,281	27,788	23,797	14,609	2,227	164,033	23,568	32,271	32,139	31,748	36,586	43,338	55,956	8,867
	접종자	296,380	34,156	24,725	14,400	18,265	11,614	7,242	5,854	555	68,928	6,253	10,847	15,401	13,366	15,395	17,867	29,323	2,189
	접종률	38.9	25.8	24.7	36.6	43.2	41.8	30.4	40.1	24.9	42.0	26.5	46.6	47.9	42.1	42.1	41.2	52.4	24.7
요양기관	대상자	204,586	17,185	21,344	8,761	10,897	8,901	6,152	4,790	342	47,383	3,979	6,197	9,391	9,829	12,255	15,193	21,082	885
	접종자	165,743	12,845	17,460	7,202	9,063	8,020	5,119	4,127	323	36,001	3,036	5,377	7,872	8,742	10,821	11,404	17,640	691
	접종률	81.0	74.7	81.8	82.2	83.2	90.1	83.2	86.2	94.4	76.0	76.3	86.8	83.8	88.9	88.3	75.1	83.7	77.2
요양시설	대상자	108,453	7,742	3,722	4,601	7,598	2,083	3,791	1,247	368	32,345	5,625	5,475	6,205	5,056	5,691	7,683	6,735	2,484
	접종자	53,380	4,234	2,290	2,556	3,276	1,775	1,422	364	102	10,710	2,798	2,598	4,488	3,628	3,999	3,377	4,589	1,184
	접종률	49.2	54.7	61.5	55.6	43.1	85.2	37.5	29.2	27.7	33.1	49.6	47.4	72.3	71.8	70.3	44.0	68.1	47.7
1차 대응	대상자	77,301	10,319	4,127	1,977	4,507	1,649	1,483	1,235	579	13,109	4,435	3,616	6,221	4,385	6,320	6,423	5,905	1,411
	접종자	2,551	198	158	5	112	46	0	25	12	776	90	202	38	185	154	163	373	14
	접종률	3.3	1.9	3.8	0.3	2.5	2.8	0.0	2.0	2.1	5.9	2.0	5.6	0.6	4.2	2.4	2.5	6.8	1.0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코로나19 의심 환자(의심) 진단 기 판	대상자	315,249	84,616	26,726	21,086	11,227	14,088	8,968	4,901	191	62,265	8,355	5,354	8,933	11,373	11,542	12,168	21,193	2,268
	접종자	69,457	14,227	4,652	3,975	5,552	1,694	701	1,306	118	21,176	262	2,614	2,655	739	197	2,923	6,366	300
	접종률	22.0	16.8	17.4	18.9	49.5	12.0	7.8	26.6	61.8	34.0	3.1	48.8	29.7	6.5	1.7	24.0	30.0	13.2
코로나19 예방 접종	대상자	56,504	12,718	3,991	2,910	8,052	1,067	3,408	2,436	747	8,981	1,173	2,629	1,389	1,105	778	1,871	1,440	1,809
	접종자	5,249	2,652	165	662	262	79	0	32	0	265	72	61	348	72	224	0	355	0
	접종률	9.3	20.9	4.1	22.7	3.3	7.4	0.0	1.3	0.0	3.0	6.1	2.3	25.1	6.5	28.8	0.0	24.7	0.0

\* 접종대상 : (아스트라제네카)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 1차 대응요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화이자)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 정신의료기관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정신 의료기관은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입원환자를 포함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코로나19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신고현황(3.6일 0시 기준, '21.2.26일 이후 누계, 단위: 명)】

구분	접종자수 (누계)	합계	일반 <sup>1)</sup>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sup>2)</sup>	중증 의심사례 <sup>3)</sup>	사망사례
전체	신규	296,380	1,305	1,291	11	2
	누계		2,883	2,849	24	3
아스트라제네카	신규	291,131	1,300	1,286	11	2
	누계		2,867	2,833	24	3
화이자	신규	5,249	5	5	-	-
	누계		16	16	-	-

<sup>1)</sup> 두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등 경증 사례  
<sup>2)</sup> 아나필락시스양 반응(23건)\* 및 아나필락시스 쇼크(1건) 의심사례로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사례  
 \* 예방접종 후 2시간 이내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로 아나필락시스와는 다름  
<sup>3)</sup> 경련(1건), 중환자실 입원(2건) 포함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것으로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이며,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등의 중증사례에 한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인과성을 평가함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  
 (3.6일 0시 기준)는 총 **2,883건\***(신규 1,305건)으로,

\*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 가능

- **2,849건(신규 1,291건)**은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두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등 경미한 사례였으며,

- **24건(신규 11건)**의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경련 등 3건(신규 2건)의 중증 의심 사례, 7건(신규 1건)의 사망 사례가 보고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 아나필락시스 쇼크, 아나필락시스양, 아나필락시스로 구분

-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 ~ '21.3.14.)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 ~ '21.3.14.)  
 5.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 <별첨> 1.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2.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3.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4.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5.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6.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8.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9.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10.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2.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3.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4.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9.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0.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1.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1 일일 확진자 현황 (3.6. 0시 기준, 92,05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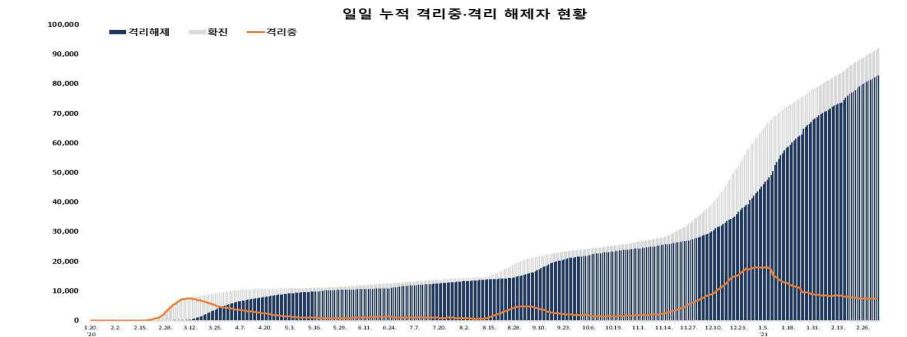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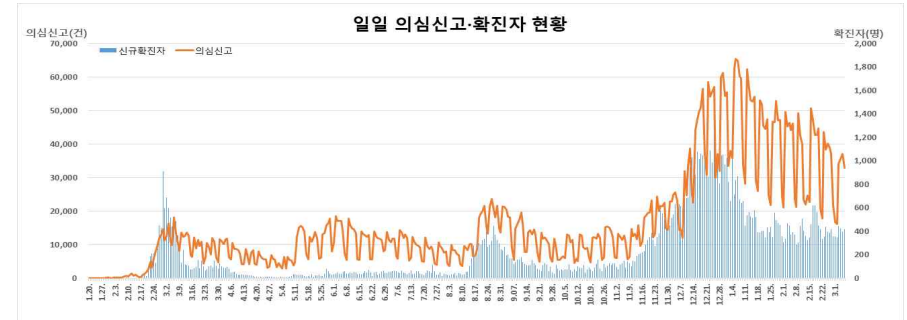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1.31 이후 누계) >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증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3.5.(금) 0시 기준	6,789,011	91,637 <sup>1)</sup>	82,560	7,450 <sup>1)</sup>	1,627	63,707	6,633,667 <sup>1)</sup>
3.6.(토) 0시 기준	6,821,943	92,055	82,913	7,510	1,632	65,171	6,664,717
변동	+32,932	+418	+353	+60	+5	+1,464	+31,050

\* 3.5일 0시부터 3.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 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sup>1)</sup> 검사과정 오류에 따른 정정(2.26. 0시 기준, 서울 -1)





2 지역별 확진자 현황 (3.6. 0시 기준, 92,055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국내발생	해외유입			
서울	126	2	28,947 <sup>1)</sup>	(31.45)	297.40
부산	12	0	3,314	(3.60)	97.13
대구	3	1	8,680	(9.43)	356.25
인천	19	1	4,527	(4.92)	153.14
광주	1	2	2,114	(2.30)	145.12
대전	0	0	1,196	(1.30)	81.13
울산	4	0	1,023	(1.11)	89.19
세종	1	1	239	(0.26)	69.82
경기	172	1	24,588	(26.71)	185.56
강원	7	0	1,894	(2.06)	122.94
충북	22	0	1,842	(2.00)	115.17
충남	7	0	2,476	(2.69)	116.66
전북	4	0	1,228	(1.33)	67.57
전남	3	0	875	(0.95)	46.92
경북	13	0	3,305	(3.59)	124.13
경남	5	0	2,216	(2.41)	65.93
제주	5	0	589	(0.64)	87.81
검역	0	6	3,002	(3.26)	-
총합계	404	14	92,055 <sup>1)</sup>	(100)	177.55

\* 지역별 '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1) 검사과정 오류에 따른 정정(2.26. 0시 기준, 서울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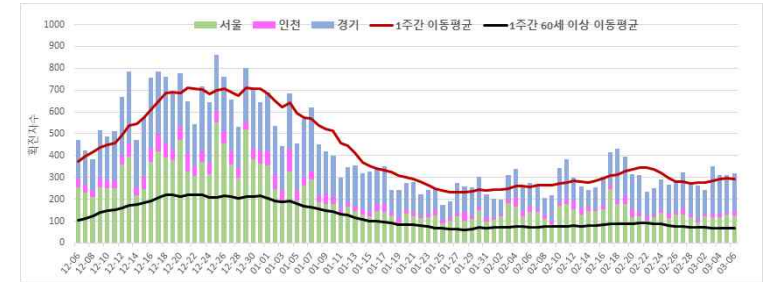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 ('20.1.3일 이후 누계) >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검역
격리 중	7,510	2,926	218	115	232	118	26	23	24	2,373	77	156	159	107	71	112	57	36	680
격리해제	82,913	25,628	2,987	8,351	4,242	1,975	1,155	963	214	21,713	1,775	1,628	2,282	1,066	796	3,122	2,146	552	2,318
사망	1,632	393	109	214	53	21	15	37	1	502	42	58	35	55	8	71	13	1	4
합계	92,055	28,947	3,314	8,680	4,527	2,114	1,196	1,023	239	24,588	1,894	1,842	2,476	1,228	875	3,305	2,216	589	3,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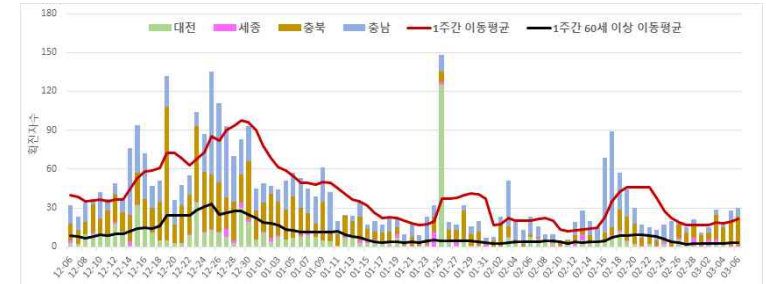
\* 3월 5일 0시부터 3월 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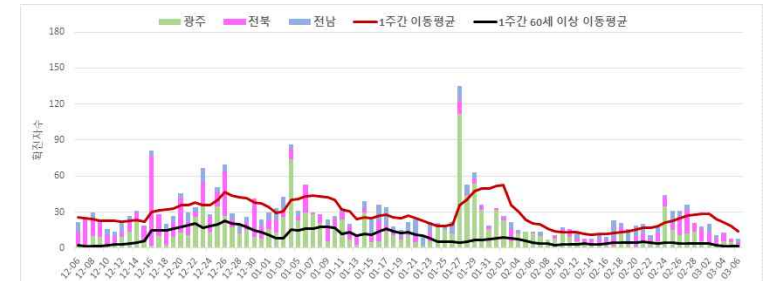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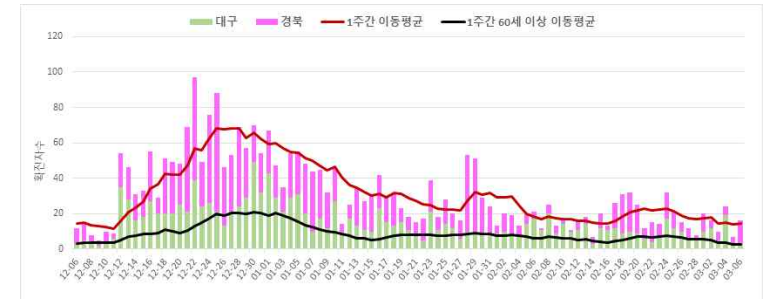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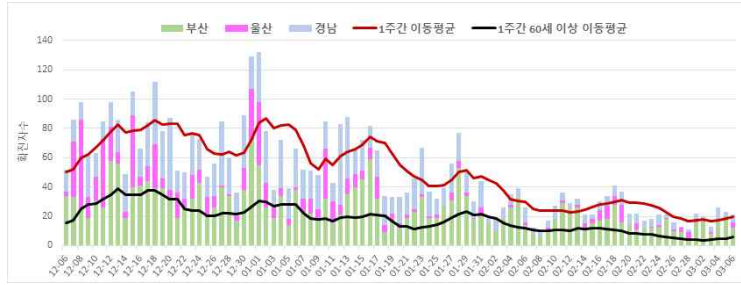


경북권  
(대구, 경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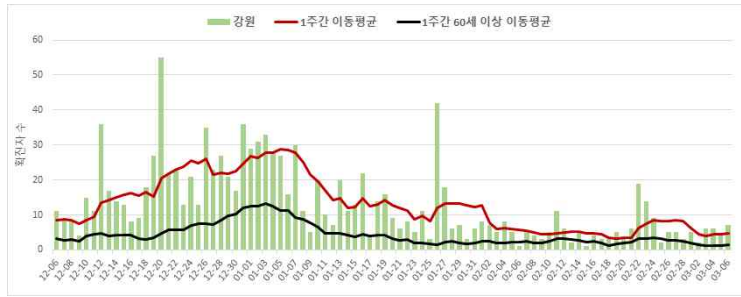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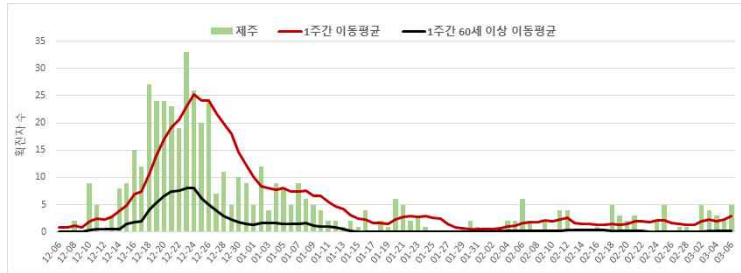
경남권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강원)



제주권  
(제주)



3]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 (3.6. 0시 기준, 92,055명)

<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

구분	금일 신규 (%)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계	418 (100)	92,055 <sup>1)</sup> (100)	177.55	
성별	남성	226 (54.07)	45,502 (49.43)	175.94
	여성	192 (45.93)	46,553 (50.57)	179.16
연령	80세 이상	9 (2.15)	4,447 (4.83)	234.15
	70-79	23 (5.50)	6,936 (7.53)	192.29
	60-69	58 (13.88)	14,328 (15.56)	225.84
	50-59	65 (15.55)	17,095 (18.57)	197.24
	40-49	65 (15.55)	13,245 (14.39)	157.88
	30-39	64 (15.31)	12,095 (13.14)	171.68
	20-29	85 (20.33)	13,905 (15.11)	204.29
	10-19	28 (6.70)	6,229 (6.77)	126.08
0-9	21 (5.02)	3,775 (4.10)	90.99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sup>1)</sup> 검사과정 오류에 따른 정정(2.26. 0시 기준, 서울 -1)

4]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 (3.6. 0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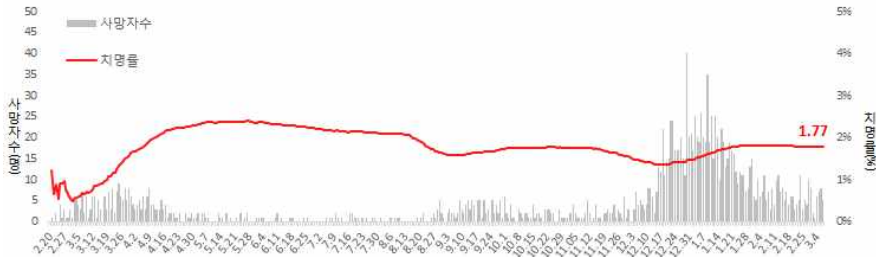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구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계	5 (100)	1,632 (100)	1.77	
성별	남성	1 (20.00)	812 (49.75)	1.78
	여성	4 (80.00)	820 (50.25)	1.76
연령	80세 이상	2 (40.00)	921 (56.43)	20.71
	70-79	3 (60.00)	450 (27.57)	6.49
	60-69	0 (0.00)	186 (11.40)	1.30
	50-59	0 (0.00)	54 (3.31)	0.32
	40-49	0 (0.00)	14 (0.86)	0.11
	30-39	0 (0.00)	6 (0.37)	0.05
	20-29	0 (0.00)	1 (0.06)	0.01
	10-19	0 (0.00)	0 (0.00)	0.00
0-9	0 (0.00)	0 (0.00)	0.00	

\*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일별 사망자 현황 >



< 위중증 현황 >

구분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3.1.	3.2.	3.3.	3.4.	3.5.	3.6.
계	155	146	148	140	144	144	142	135	131	135	129	140	135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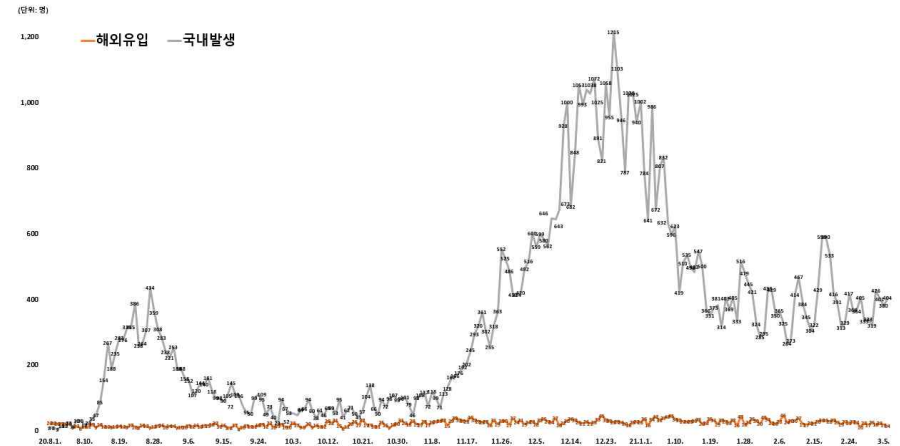
구분	위중증	( % )
계	136	( 100.0 )
80세 이상	30	( 22.1 )
70-79세	48	( 35.3 )
60-69세	42	( 30.9 )
50-59세	15	( 11.0 )
40-49세	0	( 0.0 )
30-39세	1	( 0.7 )
20-29세	0	( 0.0 )
10-19세	0	( 0.0 )
0-9세	0	( 0.0 )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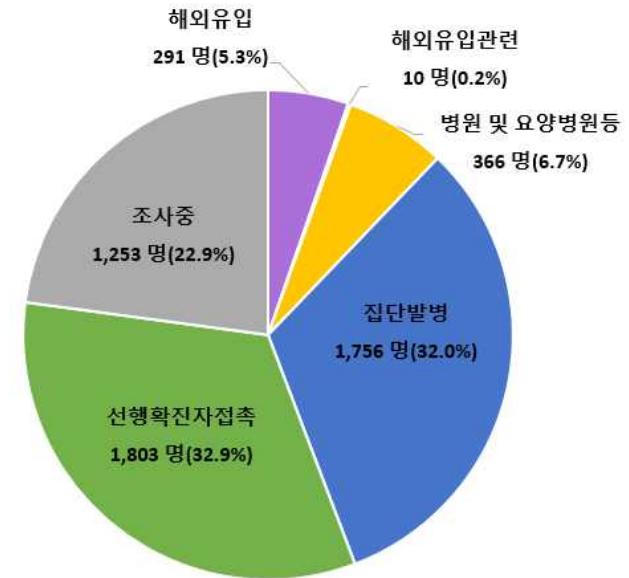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5 감염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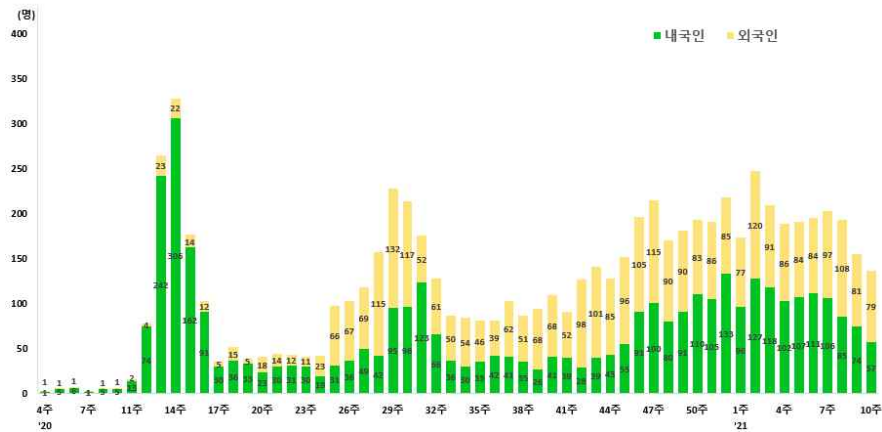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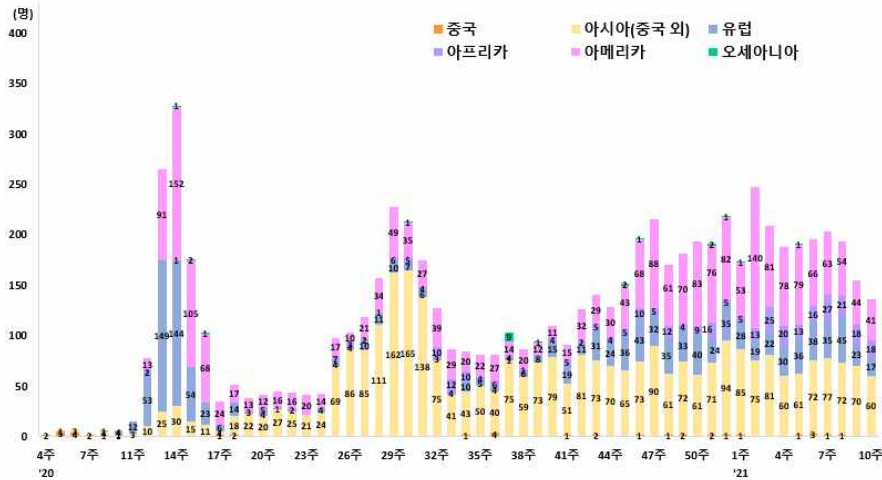
<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 최근 2주간 ('21.2.21일 0시~'21.3.6일 0시까지 신고된 5,479명) 감염경로 구분 >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 주요 집단 발생 현황 >

지역	확진환자(단위: 명, %)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누계	해외유입	집단발생 관련			기타*	조사중	신규	
			소계	신천지 관련	집단발생	해외유입 관련			
서울	28,947	936	10,889	8	10,781	100	9,469	7,653	128
부산	3,314	135	2,050	12	1,981	57	668	461	12
대구	8,680	157	6,439	4,512	1,920	7	1,139	945	4
인천	4,527	235	2,125	2	2,113	10	1,407	760	20
광주	2,114	132	1,698	9	1,683	6	138	146	3
대전	1,196	54	643	2	640	1	313	186	0
울산	1,023	93	725	16	705	4	127	78	4
세종	239	26	117	1	115	1	48	48	2
경기	24,588	1,533	9,790	29	9,682	79	8,288	4,977	173
강원	1,894	75	1,070	17	1,052	1	486	263	7
충북	1,842	90	1,004	6	991	7	467	281	22
충남	2,476	165	1,307	0	1,306	1	602	402	7
전북	1,228	106	875	1	873	1	126	121	4
전남	875	69	627	1	615	11	94	85	3
경북	3,305	165	2,305	565	1,736	4	495	340	13
경남	2,216	154	1,375	33	1,309	33	386	301	5
제주	589	33	373	0	372	1	106	77	5
검역	3,002	3,002	0	0	0	0	0	0	6
합계	92,055	7,160	43,412	5,214	37,874	324	24,359	17,124	418
	(%)	(7.8)	(47.2)	(5.7)	(41.1)	(0.4)	(26.5)	(18.6)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6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및 확진자 현황 (3.6. 0시 기준)

구분	임시선별 검사소 수 (개소) <sup>1)</sup>	검사(건)					확진자(명)
		계	비인도도말 PCR	타액 PCR	신속항원 검사	2차 비인도도말 PCR <sup>2)</sup>	
신규	0	29,704	29,659	0	45	0	75
서울	0	10,236	10,224	0	12	0	30
경기	0	17,521	17,488	0	33	0	43
인천	0	1,947	1,947	0	0	0	2
누계	97	2,355,982	2,333,893	4,235	17,806	48 <sup>3)</sup>	6,348
서울	26	1,036,891	1,028,844	1,485	6,542	20	3,155
경기	65	1,141,541	1,127,783	2,719	11,012	27	2,816
인천	6	177,550	177,266	31	252	1	377

1) (임시선별검사소 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 (2차 비인도도말 PCR)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실시  
 3) 양성 32건, 음성 16건

7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 (2.28~3.6.)

구분	2.28.	3.1.	3.2.	3.3.	3.4.	3.5.	3.6.	주간누계	총 누계
계	44,241	32,953	30,996	64,743	63,375	64,381	62,636	363,325	9,177,925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 <sup>1)</sup>	21,791	16,749	16,221	34,227	35,697	37,111	32,932	194,728	6,821,943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건) <sup>2)</sup>	22,450	16,204	14,775	30,516	27,678	27,270	29,704	168,597	2,355,982
신규 확진자 수(명)	355	355	344	444	424	398	418	2,738	92,055
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수(명)	41	57	53	113	64	57	75	460	6,348

1) (의심신고 검사자 수)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결과 음성+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붙임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80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단위: 명>

구분	누적 발생		신규 발생		치명률 (%)	인구10만명당 발생자 수 <sup>1)</sup>
	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사망자		
미국	28,468,736	515,013	65,320	1,942	1.81	8,600.83
인도	11,173,761	157,548	16,838	113	1.41	809.69
브라질	10,718,630	259,271	71,704	1,910	2.42	5,041.69
러시아	4,301,159	88,285	11,024	462	2.05	2,948.02
영국	4,201,362	124,025	6,573	242	2.95	6,187.57
프랑스	3,768,799	87,371	24,739	278	2.32	5,771.51
스페인	3,142,358	70,501	2,676	32	2.24	6,714.44
이탈리아	2,999,119	98,974	22,845	339	3.30	4,957.22
터키	2,746,158	28,839	11,322	68	1.05	3,257.60
독일	2,482,522	71,504	10,580	264	2.88	2,962.44
콜롬비아	2,262,646	60,082	3,047	110	2.66	4,445.28
아르헨티나	2,130,087	52,505	3,556	52	2.46	4,712.58
멕시코	2,104,987	188,044	7,793	857	8.93	1,633.04
폴란드	1,766,490	44,912	15,831	263	2.54	4,673.25
이란	1,665,103	60,431	8,404	78	3.63	1,982.27
남아프리카공화국	1,517,666	50,462	1,404	96	3.32	2,559.30
우크라이나	1,384,917	26,763	10,155	172	1.93	3,169.15
인도네시아	1,361,098	36,897	7,264	176	2.71	497.66
페루	1,344,969	47,089	6,672	195	3.50	4,075.66
체코	1,299,002	21,325	14,714	197	1.64	12,140.21
네덜란드	1,105,544	15,730	4,161	33	1.42	6,465.17
캐나다	875,559	22,105	2,812	60	2.52	2,322.44
칠레	840,119	20,838	4,567	134	2.48	4,398.53
루마니아	816,589	20,684	4,271	98	2.53	4,253.07
포르투갈	806,916	16,458	290	28	2.04	7,910.94
필리핀	584,667	12,404	2,444	15	2.12	533.46
방글라데시	548,549	8,435	619	7	1.54	333.06
일본	436,728	8,119	1,180	67	1.86	345.24
헝가리	452,547	15,619	6,369	143	3.45	4,665.43
네팔	274,488	3,010	107	0	1.10	943.26
미얀마	142,000	3,200	16	1	2.25	261.03
중국	89,962	4,636	10	0	5.15	6.25
키르기스스탄	86,451	1,470	41	2	1.70	1,330.02
우즈베키스탄	80,081	622	46	0	0.78	239.05
태국	26,241	85	79	0	0.32	37.59
베트남	2,488	35	6	0	1.41	2.56
대한민국	92,055	1,632	404	5	1.77	177.59

1) 국가별 총 인구수: 유엔인구기금(UNFPA) '20년 기준, 대한민국 '20.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붙임 3 |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 ~ '21.3.14.)**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b>① 모임·행사</b>	
사적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외)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li> </ul> </li> <li>-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li> </ul>
기타 모임·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li> <li>*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li> <li>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li> </ul>
<b>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b>	
공통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li> </ul>
유흥시설 5종, 홀덤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li> <li>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li> <li>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li> <li>가장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li> <li>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li> </ul>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li> <li>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li> <li>*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li> </ul>
노래연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li> <li>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상)</li> <li>*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li> <li>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특별 1명씩만 이용 가능</li> </ul>
실내 스탠딩공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li> <li>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li> </ul>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li> <li>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li> <li>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운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li> <li>뷔페의 경우 공용접개·접사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li> </ul>
파티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li> <li>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li> <li>*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li> <li>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li> </ul>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li> <li>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li> <li>*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li> </ul>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li> <li>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li> <li>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li> <li>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체 권고</li> <li>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li> <li>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li> <li>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li> <li>*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li> </ul>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①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li> </ul>
직업훈련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li> </ul>
결혼식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li> </ul>
장례식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li> </ul>
목욕장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li> <li>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b>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b></li> </ul>
영화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b>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b></li> </ul>
공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b>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b></li> </ul>
PC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li> <li>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ul>
오락실·멀티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li> </ul>
독서실·스터디카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li> <li>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li> </ul>
놀이공원·워터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li> </ul>
이·미용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li> </ul>
백화점·대형마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b></li> </ul>
마트·상점 (30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스크 착용</li> <li>주기적 환기·소독</li> </ul>
<b>③ 기타 다중이용시설</b>	
숙박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li> <li>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li> <li>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li> <li>객실 정월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li> </ul>
국공립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li> <li>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li> </ul>
사회복지이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li> </ul>
<b>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b>	
마스크 착용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li> </ul>
교통시설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li> <li>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li> </ul>
스포츠 관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 이내 입장</li> </ul>
등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li> </ul>
종교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li> <li>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li> <li>*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li> </ul>
직장근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li> <li>점심시간 사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li> <li>*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li> <li>-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li> <li>-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li> <li>▶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사차 운영 등 적극 활용</li> <li>*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li> </ul>

**붙임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 ~ '21.3.14.)**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b>① 모임·행사</b>	
사적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b></li> <li>* (제외)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li> <li>- <b>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b></li> </ul>
기타 모임·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li> <li>▶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li> </ul>
<b>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b>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b></li> <li>▶ <b>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b></li> <li>▶ <b>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b></li> <li>▶ <b>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b></li> <li>▶ <b>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b></li> </ul>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li> <li>▶ <b>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b></li> <li>▶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ul>
노래연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li> <li>▶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li> </ul>
실내 스탠딩공연장	▶ 음식섭취 금지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b></li> <li>▶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운 경우</li> <li>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li> <li>▶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li> </ul>
파티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b></li> <li>* 출입구 등에 발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li> <li>▶ <b>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b></li> </ul>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li> </ul>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수용인원의 50%로 인원제한</b></li> <li>▶ <b>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b></li> <li>▶ <b>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b></li> <li>▶ <b>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b></li> <li>▶ <b>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b></li> <li>▶ <b>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b></li> <li>▶ <b>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b></li> <li>*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li> </ul>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직업훈련기관	
결혼식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b>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b>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영화관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 <b>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b>
마트·상점 (300㎡ 이상)	▶ <b>마스크 착용</b>
	▶ 주기적 환기·소독
<b>② 기타 다중이용시설</b>	
숙박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b></li> <li>▶ <b>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b></li> <li>▶ <b>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b></li> <li>▶ <b>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b></li> </ul>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b>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b>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위료기관·약국 등 시설 및 지자체에 협의·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스포츠 경기장 등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스포츠 관람	▶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구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li> <li>▶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li> <li>*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구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li> </ul>
직장근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li> <li>*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li> <li>▶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li> <li>▶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li> </ul>



## 붙임 5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감염병 보도준칙

####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과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 기본 원칙

#####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사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상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의자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 ‘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땀 대재앙”

####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을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 부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